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년 9월 9일(화) 11:00이후

담 당 : 기업지원본부 박영규 과장대리
(990-7064)

부산상공회의소-밀양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상의 회원사 임직원에 문화·관광 인센티브 제공... 상생 교류 확대

▶ 밀양시 문화·관광시설 이용 지원 및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협력
▶ 부산-밀양 간 인적·경제적 교류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와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9일(화) 오전 11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양 지역 간 교류 증진과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신한춘 부회장 그리고 안병구 밀양시장과 주보원 밀양상의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밀양시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밀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해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밀양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여 양 지역 간 인적·경제적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한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부산과 밀양이 오랜 기간 쌓아온 강력한 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산기업들과 밀양시가 더욱 노력해 상생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구 밀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협약은 밀양과 부산이 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력이 부산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에게는 힐링과 여가의 기회를, 밀양시는 지속적인 생활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 부 1. 협약개요 1부.

부산상공회의소-밀양시 협약 추진 계획

1 협 약 개 요

○ 일　　시: 2025. 9. 9.(화) 11시

○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

○ 주요내용: 회원사 문화관광 이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참석대상: 회장 등 8명, 밀양시장 등 11명

○ 시간개요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0:50~11:00	10’	차담회	8층 접견실
11:00~11:05	5’	참석자 소개	8층 회의실
11:05~11:10	5’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11:10~11:15	5’	밀양시장 인사말	
11:15~11:20	5’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11:20~11:23	3’	협약서 주요내용 설명	
11:23~11:25	2’	협약서 서명 및 기념품 교환	
11:25~11:30	5’	기념촬영	
11:30~12:00	30’	폐회 및 오찬장 이동	
12:00~13:00	60’	오찬	

부산상공회의소-밀양시 문화 관광시설이용 및 교류

업 무 협 약 서 (안)

부산상공회의소와 밀양시(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의 교류 증진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밀양시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밀양시는 위 부산상공회의소와 해당 기관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밀양시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 및 대상자 확인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으로 정한다.

② 부산상공회의소는 감면 대상자 확인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밀양시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성화 등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약의 조건) 협약 이후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협약의 내용 변경 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협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협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원본 2부를 작성하며,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서명 후, 보관한다.

2025. 9. 9.

부산상공회의소

회 장

밀양시

밀양시장